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917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

전 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순

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D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7. D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피고 1 내지 5,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인식

8. I 주식회사

피고 6,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박종욱, 오흥석, 장종철

판 결 선 고 2021. 7. 8.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20690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 두우의 상고이유 제1점, 변호사 김형순의 상고이유 제1, 2점(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2007. 3. 5.자 약정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주식회사 P이 보유한 수익권증서 인수자금 120억 원을 조달할 의무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회사 CK에 대한 채무 14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2007. 3. 5.자 약정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B이 2007. 3. 5.자 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의무를 위법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무법인 두우의 상고이유 제2점, 변호사 김형순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O 및 피고 B 등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가 J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수도 있는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친 담보가등기로, J 등과 AU, O, N 사이에서 이 사건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 및 피고 B 등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가등기 유용 및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변호사 김형순의 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 등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선행 가압류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탈하려는 불법한 목적 달성을 그 동기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4. 법무법인 두우의 상고이유 제3점(제1예비적 청구 관련 제척기간 준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변호사 김형순의 상고이유 제6점(제2예비적 청구 중 J의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하는 부분 관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원고가 J를 대위하여 보전하려는 권리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노태악